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0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8.

발 의 자:전진숙·백혜련·김 윤

임호선 · 김한규 · 이수진

남인순 • 박주민 • 서영석

이인영 · 김정호 · 박균택

김윤덕 · 이정문 · 김원이

허종식 • 박희승 • 이훈기

권칠승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뿐인 상황으로,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필요가 있음.

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해당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모든 처방 소프트웨어들을 연계되도록 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특정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외부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려는 마약

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그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처방 소프트 웨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 임(안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1항제6호 중 "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"를 "기능 검사, 지원 및 결과 공개"로 한다.

제11조의3의 제목 중 "구축·운영"을 "구축·운영 및 연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"구축 및 운 영"을 "구축·운영·연계 및 지원"으로 한다.

-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(의료기관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해당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	제11조의2(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
터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	터) ①
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	
3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	
보(이하 "마약류 통합정보"라	
한다)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	
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	
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(이하	
"통합정보센터"라 한다)로 지정	
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	
탁할 수 있다.	<u>.</u>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	6
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	
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	<u>7]</u>
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에 관	능 검사, 지원 및 결과 공개-
한 사항	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1조의3(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	제11조의3(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
의 <u>구축·운영</u>) ① (생 략)	의 <u>구축·운영 및 연계</u>) ① (현
	행과 같음)

<신 설>

<신 설>

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(의료기관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해당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.